

# 조 례 안 예 고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2-8호

##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에서 운영자에 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운영의 위탁에 관한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상위법령 근거 규정 추가(안 제5조)
- 나. 위·수탁협약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조문 위치 변경(안 제8조제4항)
- 라. 운영의 위탁 및 위·수탁협약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등
- 다. 의견제출 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1) 주 소: 우)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의회)

(2) 전화번호: 055-650-2943(Fax. 055-650-2999)

##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협약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운영의 위탁) ① <u>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운영능력이 있는 자</u></li> <li>2. <u>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u></li> <li>3. <u>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u></li> <li>4. <u>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u></li> </ol> <p>② <u>시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u></p> <p>제6조(위·수탁협약)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u></p>	<p>제5조(운영의 위탁) ① <u>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u></p> <p><u>&lt;삭 제&gt;</u></p>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생략)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생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  
-----  
-----  
---

1. ----- 제5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
3. ----- 계약사항  
-----
4. (현행과 같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